

## 8. 도시계획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중개정령(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80호 1999. 3. 4.

### 개 정 이 유

1998년 11월 25일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시안에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는 「개발제한 구역내 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주 요 내 용

-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구역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신축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기존주택(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주택 및 기타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에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가.의 단독주택을 말한다)과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슈퍼마켓,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고, 건축연면적이 200㎡이하이어야 함)의 건축을 허용함.
- 나. 건축규모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범위내에서 3층 이하로 하되, 주택의 경우는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현행 증·개축규모(건폐율 60%, 거주기간별 30평, 40평, 60평, 90평) 및 3층이하로 선택적

건축이 가능토록 함.

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다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신축된 주택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제한함.

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답등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의 일부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건축연면적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되, 건축면적의 2배(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00㎡까지 가능)이내를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함.

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대규모 토지는 330㎡이하로 분할하여 신축할 수 없도록 함.

주택회보